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2
----------	-----

제출년월일 : 2005. 3.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법률 제7335(2005. 1.14)호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법률명 자구 수정 및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1조)
- 위원회의 기능 개정 (제5조)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제5조 제1호 신설)
 -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제5조 제2호 신설)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제5조 제3호 신설)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제5조 제4호 신설)

3.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법률 제7335호 : 2005. 1.14. 개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77호 : 2005. 1.14. 개정)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첨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u>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u>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u> 2. <u>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u> 3. <u>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p><u>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u>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u>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기능)-----</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u> 2. <u>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3. <u>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u> 4. <u>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5. <u>법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관계법령 발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2005.1.14 법률 제7335호]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05.1.14 대통령령 제18677호]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각정평가에 과학·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충 청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세부추진일정 등 변경 통보

1. 건교부 지가제도과-168(2005.01.18)호와 관련임.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 법률 제7335(2005.1.14)호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677(2004.1.14)호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이 매년 5월31일로 변경되어 금년의 개별공시지가조사 세부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통보하니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별공시지가 주요 추진일정 변경 사항

- 「200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2쪽을 참조하여 법 개정시의 추진일정(1월1일, 7월1일 기준)에 의거 지가조사의 세부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단계별 추진실적은 불임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주요행정사항 일정표 및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개별공시지가 심의는 2005년 5월 25일까지 완료하고 심의결과는 즉시 시·도에 제출(시·도에서는 2005년 5월 27일까지 건설교통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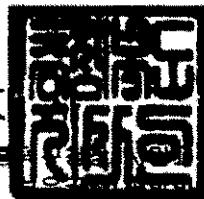
다. 기타 행정 사항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주요 행정사항(보고사항 등)은 불임 서식에 의거 기일엄수 제출할 것

-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시·군·구의 조례개정 등(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무리 할 것.

불 임 1.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세부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부. 끝.

충청북도지



수신자 청주시장(도시과장), 상당구청장(시민과장), 청원군수(민원과장), 충주시장(지적민원과장)
 재천시장(생활민원과장), 청원군수(민원과장), 청원군수(민원과장), 청원군수(민원실장), 옥천군수(종합민원처
 리과장), 영동군수(민원과장), 증평군수(종합민원과장), 진천군수(종합민원실장), 괴산군수(종
 합민원실장), 음성군수(종합민원과장), 단양군수(민원과장)

★ 지방지적주사 김영재 지방행정사무관 임종호 자적과장 둔태석 건설교통국장 전결 01/19
 김종운

협조자 지방지적사무관 양승소 지방지적사무관 한홍구

시행 지적과-384 (2005.01.19.) 접수 생활민원과-617 (2005.01.20.)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4612 / 전송 043) 220-4619 / 4612ky@cb21.net / 공개

홈 > 사이버시정 > 입법예고

검색

■ 입법예고사항**입법예고**

* 제천시 지방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입법예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No. 124

147 Date : 01.27.2005 11:40AM Hit : 147

이 름 생활민원과

제 목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공고 제 2005-46 호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1.27

제천시장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법률 제7335(2005.1.14)호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제1조)
-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심의 및 조정사항. 신설(제5조 제2호 신설)
- 표준주택 조사, 평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제5조 제3호 신설)

 의견제출

이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1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생활민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번호 전화640-5388, FAX640-4395)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